##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병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474

발의연월일: 2021. 1. 19.

발 의 자:김병욱 · 신현영 · 김정호

전재수・최인호・고용진

전용기 · 전혜숙 · 유동수

김종민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·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등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음.

개·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진료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, 동물병원의 진료·수술 등 동물진료행위 및 진료비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, 동물보험제도의 활성화 등 반 려동물 진료를 비롯한 동물의료제도의 개선·발전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.

이에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동물의료제도의 개선·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제4조제1항제6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동물의료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국가・지방자치단체 및 국	제4조(국가・지방자치단체 및 국
민의 책무) ① 국가는 동물의	민의 책무) ①
적정한 보호·관리를 위하여 5	
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	
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	
립 · 시행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	
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	
조하여야 한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6. 동물의료제도 발전에 관한
	<u>사항</u>
<u>6.</u> (생 략)	<u>7.</u> (현행 제6호와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